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정문화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77
----------	-----

2017. 4. 28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4월 20일

-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조병옥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4호, 2016.12.27. 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, 「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」에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종전「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

- 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규정(안 제2조)
-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매분기 → 매월로 변경(안 제3조)
- 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한 것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577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4월 1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

의안
번호

577

제출연월일 : 2017년 4월 1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4호, 2016.12.27. 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, 「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」에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종전 「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
 -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(안 제2조)
 -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매분기 → 매월로 변경(안 제3조)
 -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(안 제4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)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른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, 체납정보의 공개일, 그 밖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징수교부금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충청북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」에 따른다.

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」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세징수법

제11조(고액·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채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(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)가 1천만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해서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지방세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(이하 "채납정보"라 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채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.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채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,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채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,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,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채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채납정보는 채납자의 성명·상호(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), 나이, 직업, 주소 또는 영업소(「도로명주소법」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), 채납액의 세목·납부기한 및 채납요지 등으로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시·군·구 내의 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(이하 "시·도세"라 한다)를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. 다만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·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·군·구가 부담하고,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·군·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·도세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

제105조(채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
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·승인·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.

□ 지방세징수법시행령

제24조(도세 징수의 위임 등)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(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)은 100분의 3으로 한다.